의안번호		제 328 호
의	결	2016년 월 일
연 월	일	(제 345 회)

# 충청북도 이·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			
제출연월일	2016년 1월 15일			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이·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호 328 제출연월일: 2016년 1월 15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○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·통장의 역량강화 등을 통한 원활한 국·도정 업무 추진을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 충청북도 이·통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등
- 정의(안 제2조) 이·통장 및 활성화 단체 등에 대한 정의 등
- 사업의 범위(안 제3조) 도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지원, 역량강화 사업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
- **3. 의안전문** : 붙 임
- **4. 관계법령 발췌** : 붙 임
- 5. 비용추계서 : 붙 임

# 충청북도 이 · 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·봉사하는 충청북도 이·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  - 1."이·통장"이란 충청북도내 각 시·군의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.
  - 2."이·통장활동 활성화 단체"란 이·통장활동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, 도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·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사업의 범위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 - 1.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
  - 2. 이·통장 의식 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
  - 3. 이·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  - 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도지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이·통장활동 활성화 단체(이하 "활성화단체"라 한다)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

- 제4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, 소요경비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.
- 제5조(결산보고 등) 보조사업을 수행한 활성화단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도·감독 등)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- 제7조(포상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.
  - 1.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 · 통장
  - 2. 그 밖에 이·통장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·통장
  -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8조(준용)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련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재정법

-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 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 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 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  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 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

-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(제 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
- 부칙 제5조(기부·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 연도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충청북도 이·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1. 사업개요

○ 도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·봉사하는 충청북도 이·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함

#### 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 지원

#### 3. 관련조문

- 사업의 범위(안 제3조 2항 및 3항)
  - 도지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이·통장 활동 활성화 단체(이하 "활성화단체"라 한다)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사업신청에 따른 보조금 교부

나. 추계 결과 : 역량강화 사업 50,000천원, 사기진작 사업 55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<b>1차년도</b> (2016년)	<b>2차년도</b> (2017년)	<b>3차년도</b> (2018년)	<b>4차년도</b> (2019년)	<b>5차년도</b> (2020년)
세 출	5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
역량강화 사업	2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
사기진작 사업	2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

6. 작성자 :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정 성 엽